

#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전부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

-2021.7.14.(수) 한국중견기업연합회-

## □ 친족(특수관계인) 범위 축소 필요(안 제4조 제1호 가목)

현 행	개 정 안	중견기업계 의견
<p>제3조(기업집단의 범위)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.</p> <p>1.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동일인관련자”라 한다)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(「상법」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3조의2, 제17조의5,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)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</p> <p>가. 배우자, 6촌 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인척(이하 “친족”이라 한다)</p> <p>나 ~ 마. (생략)</p>	<p>제4조(기업집단의 범위) 법 제2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.</p> <p>1.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동일인관련자”라 한다)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(「상법」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5조, 제31조 및 제32조 제2항에서 같다)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</p> <p>가. ----- ----- &lt;좌동&gt;</p> <p>나 ~ 마. (생략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령상 친족(특수관계인)의 범위*가 핵가족화 등 현실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친족 간 이해관계나 교류가 없음에도 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시킴</li> <li>- 외국의 경우 대부분 친족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 중심으로 한정하여 3촌 이내 관계로 규정하고 있음 *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(한경연, 19.11.6)</li> <li>○ 기업의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도록 혈족 4촌 이내, 인척 2촌 이내로 범위를 축소해야함</li> </ul>



□ 국외 계열회사 공시대상 축소 및 주주출자현황 공시의무 삭제(안 제33조 제6항 제2호)

현 행	개 정 안	중견기업계 의견
<p>제17조의11(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) ① ~ ②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33조(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 이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의 출자로 연결되어 소유하는 방법을 말한다.</u></p> <p>⑥ <u>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</p> <p>1. <u>국외 계열회사의 명칭, 소재국, 설립일, 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등 회사의 일반현황</u></p> <p>2. <u>주주현황 및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현황</u></p> <p>⑦ ~ ⑧ (생략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내 대기업집단의 시장 지배력을 파악하기 위해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까지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해외 투자활동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약함</li> <li>○ 또한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 효과보다는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켜 투자 위축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</li> <li>○ 기업집단현황, 비상장회사 중요사항, 대규모 내부거래 등 수많은 공시의무를 지키기 위해 전담인력 배정 등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공시의무를 추가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만 가중시킴</li> <li>○ 국외 계열회사 공시대상은 특수관계인 등이 직접 투자한 국외 계열회사로 한정하고 주주 및 출자현황에 대한 공시의무 조항은 삭제해야함</li> </ul>

□ 담합이 우려되는 정보 유형에 대한 재검토 필요(안 제43조)

현 행	개 정 안	중견기업계 의견
<p>&lt;신설&gt;</p>	<p>제43조(사업자 간 교환 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형)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 는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</p> <p>1. <u>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</u>                  2. <u>출고량, 재고량 또는 판매량</u>                  3. <u>상품·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·대가의 지급조건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자 간 시장동향 파악을 위한 출고량, 판매량 등 빈번하게 교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치 않고 법령의 명시된 정보로만 부당 공동행위(담합)로 추정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경쟁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며, 불필요한 고소·고발 증가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</li> <li>○ 시장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담합의 여지가 없으므로 비공개된 정보교환으로만 한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개정안 예시&gt;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p>제43조(사업자 간 교환 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형)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 는 <u>시장에 비공개된 정보</u>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</p> </div>

□ 과징금 관련 체납가산금 요율 하향 조정 필요(안 제89조)

현 행	개 정 안	중견기업계 의견
<p>제64조(체납가산금 요율) 법 제55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체납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제64조의5(환급가산금 요율) 법 제55조의7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하여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89조(체납가산금 요율)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&lt;좌동&gt;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제93조(환급가산금 요율) 법 제106조에 따른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&lt;좌동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징금의 체납가산금 요율은 7.5%인 반면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환급가산금 요율은 1.2%로 기업에 부과하는 가산금은 높게 책정하고 있음</li> <li>○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가산금은 낮게 책정하는 등 그 격차가 6배 이상 차이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체납가산금 요율 하향 조정 필요</li> </ul>

□ 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재검토 필요(안 별표5)

현행	개정안	중견기업계 의견															
<p>[별표1의5]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(제57조의3 제2항 관련)</p> <p>1. 일반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0조 및 제50조의 4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, 명령 불이행의 정도·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50조의4 제1항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2. 개별기준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0 874 712 1361"> <thead> <tr> <th>1일 평균매출액</th> <th>부과비율</th> <th>1일당 부과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5억원 이하</td> <td>2/1,000</td> <td>1일 평균매출액 × 2/1,000</td> </tr> <tr> <td>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</td> <td>2/1,500</td> <td>300만원 + 15억원 초과분 × 2/1,500</td> </tr> <tr> <td>30억원 초과</td> <td>2/2,000</td> <td>500만원 + 30억원 초과분 × 2/2,000</td> </tr> <tr> <td>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</td> <td>-</td> <td>200만원 이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1일 평균매출액	부과비율	1일당 부과금액	15억원 이하	2/1,000	1일 평균매출액 × 2/1,000	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2/1,500	300만원 + 15억원 초과분 × 2/1,500	30억원 초과	2/2,000	500만원 + 30억원 초과분 × 2/2,000	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	-	200만원 이하	<p>[별표 5] <u>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(제78조제2항 관련)</u></p> <p>1. 일반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, 명령 불이행의 정도·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2. 개별기준 &lt;좌동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단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처벌임</li> <li>- 행정조사법 제4조 제4항은 행정조사 위반에 대해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</li> <li>○ 기업의 자료 등 제출 불이행 시 행정상 시정명령으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</li> </ul>
1일 평균매출액	부과비율	1일당 부과금액															
15억원 이하	2/1,000	1일 평균매출액 × 2/1,000															
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2/1,500	300만원 + 15억원 초과분 × 2/1,500															
30억원 초과	2/2,000	500만원 + 30억원 초과분 × 2/2,000															
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	-	200만원 이하															

□ 과징금 산정기준 재검토 필요(안 별표6)

현 행	개 정 안	중견기업계 의견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</p> <p>2. 과징금의 산정기준</p> <p>과징금은 법 제55조의3(과징금 부과)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~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.</p> <p>가.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(이하 “산정기준”이라 한다) 법 제55조의3(과징금 부과)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“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”, “중대한 위반행위”, “매우 중대한 위반행위”로 구분하고,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</p>	<p>[별표 6]</p> <p>2. 과징금의 산정기준</p> <p>---- 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-----</p> <p>----- &lt;동일&gt; -----</p> <p>가. -----</p> <p>---- 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-----</p> <p>----- &lt;동일&gt; -----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정 공정거래법은 유형별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율 및 정액 과징금을 2배씩 상향 조정함</li> <li>○ 감시대상 확대 및 의무 강화 등 기업 규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과징금 상향 조치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과잉처벌 등 기업의 부담만 증가시켜 적극적인 경영활동 제한 우려</li> <li>○ 과징금 산정기준은 목적과 수단의 비례하여 책정되어야 함으로 과징금 상한 기준에 맞춰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더욱 세분화하고 [별표10] 일반기준과 같이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필요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위반행위 유형</th> <th>세부유형</th> <th>관련 법조문</th> <th>산정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)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</td> <td>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</td> <td>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6조</td> <td>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,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 다만,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“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”이라 한다)에는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.</td> </tr> <tr> <td>2) 경제력 집중 규제 위반 행위</td> <td>가) 지주 회사의 행위 제한 위반 행위</td> <td>법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4항</td> <td>법 제1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, 법 제1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반행위 유형	세부유형	관련 법조문	산정기준	1)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	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	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6조	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,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 다만,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“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”이라 한다)에는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.	2) 경제력 집중 규제 위반 행위	가) 지주 회사의 행위 제한 위반 행위	법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4항	법 제1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, 법 제1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위반행위 유형</th> <th>세부유형</th> <th>관련 법조문</th> <th>산정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)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</td> <td>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</td> <td>법 제5조 제1항 및 제8조</td> <td>관련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,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 다만,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“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”이라 한다)에는 2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.</td> </tr> <tr> <td>2) 경제력 집중 규제 위반 행위</td> <td>가) 지주 회사의 행위 제한 등 위반 행위</td> <td>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20조 제2항, 제3항 및 제38조 제3항</td> <td>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,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위반행위 유형	세부유형	관련 법조문	산정기준	1)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	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	법 제5조 제1항 및 제8조	관련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,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 다만,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“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”이라 한다)에는 2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.	2) 경제력 집중 규제 위반 행위	가) 지주 회사의 행위 제한 등 위반 행위	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20조 제2항, 제3항 및 제38조 제3항	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,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	
위반행위 유형	세부유형	관련 법조문	산정기준																							
1)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	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	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6조	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,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 다만,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“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”이라 한다)에는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
2) 경제력 집중 규제 위반 행위	가) 지주 회사의 행위 제한 위반 행위	법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제4항	법 제1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, 법 제1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
위반행위 유형	세부유형	관련 법조문	산정기준																							
1)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	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	법 제5조 제1항 및 제8조	관련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,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 다만,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“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등”이라 한다)에는 2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
2) 경제력 집중 규제 위반 행위	가) 지주 회사의 행위 제한 등 위반 행위	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20조 제2항, 제3항 및 제38조 제3항	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,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
- 이하 생략 -	- 이하 생략 -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재검토 및 금액 하향 조정(안 별표10)

현행					개정안					중견기업계 의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5] 2. 개별기준  (단위: 만원)					[별표 10] 2. 개별기준  (단위: 만원)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하여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음</li> <li>○ 고의가 아닌 실무상 단순 누락 및 오기 등 실수에 의한 경우에도 거짓자료 제출로 판단될 여지가 높고, 1회 위반으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사권 남용* 소지가 있음 *행정조사법 제4조(행정조사의 기본원칙) 제4항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 두어야 함</li> <li>- 또한 부정행위가 아닌 조사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법에서 정한 최고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의 비례하여 과도한 규제임</li> <li>*공정거래법 시행령 안 제130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최대 1억원 이하, 임원 등은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</li> <li>○ 서면실태조사 관련 위반행위 기준을 세분화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제재(과태료) 수위 조절 필요</li> <li>- 단순 실수에 의한 위반은 과태료가 아닌 행정상 시정명령이 타당함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 <th rowspan="2">근거 법조문</th> <th colspan="3">과태료 금액</th> </tr> <tr> <th>1차 위반</th> <th>2차 위반</th> <th>3차이상 위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~마 (생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&lt;신설&gt;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이상 위반	가~마 (생략)					<신설>		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 <th rowspan="2">근거 법조문</th> <th colspan="3">과태료 금액</th> </tr> <tr> <th>1차 위반</th> <th>2차 위반</th> <th>3차이상 위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~마 (생략)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사. 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</td> <td>1) 사업자, 사업자 단체,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 관계인인 공익법인</td> <td>2,000</td> <td>5,000</td> <td>10,000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2) 회사·사업자단체·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, 그 밖의 이해관계인</td> <td>200</td> <td>500</td> <td>1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이상 위반	가~마 (생략)					사. 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	1) 사업자, 사업자 단체,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 관계인인 공익법인	2,000	5,000	10,000		2) 회사·사업자단체·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, 그 밖의 이해관계인	200	500	1,000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이상 위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~마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이상 위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~마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. 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	1) 사업자, 사업자 단체,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 관계인인 공익법인	2,000	5,000	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) 회사·사업자단체·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, 그 밖의 이해관계인	200	500	1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